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216호 2019년 7월 1일(월)

조 례

-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4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7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674호

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)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“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”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(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,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. 이하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”로,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6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좋은 눈의 시력 0.06 초과 0.1 이하인 사람

2.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
제3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8조제4항제2호”를 “법 제38조제4항제1호”로,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제8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제10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
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7월 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조례 제2675호

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

제1조(「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7호 중 “보호자 1명(단, 보호자는 1~3급 장애인과 동반한 경우에
한함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
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급 이상의”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속
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따라 장애등급이 1~2급 및 3급 중복포함”을 “따른 장애의 정도
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
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8호 중 “장애인(1~3급)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1급 또는 2급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제1호 중 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(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)”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(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)”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7호 중 “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1명”을

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(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인 포함)”을 “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